

의안번호	제 552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윤남진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0년 10월 5일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윤남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0월 5일
발 의 자 : 윤남진, 연종석, 송미애
이상정, 이상식, 박형용
이숙애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과학기술기본법(시행령)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이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시행령)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을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으로 변경
(안 제1조 ~ 안 제3조)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생략함
-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함
-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4제3항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24조의4제4항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, 충청북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4제4항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제4조의7(기술창업 활성화 등)
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
제5조의7(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)

- ③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.